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78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구자근 · 김선교 · 강대식
최수진 · 강승규 · 김위상
박준태 · 김도읍 · 유상범
최은석 · 강명구 · 박성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정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적 과세'로 설계된 최고세율 구간이 점차 중산층 주택에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과세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수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주택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 가.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 나. 주택 취득세율 1~3%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나목).
- 다. 주택 취득세율 3% 적용 구간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다목).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을 “9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left(\frac{\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3\text{억원}} \times \frac{2}{100} - 5 \right) \times \frac{1}{1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illegible]
$$\frac{\text{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text{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 \frac{\text{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text{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times \text{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 9억원 -----

나. ----- 9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

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
지 계산한다.

$$\left(\frac{\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3\text{억원}} \times 2 - 3 \right) \times \frac{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 ⑤ (생략)

-----.

-----.

$$\left(\frac{\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3\text{억원}} \times 2 - 5 \right) \times \frac{1}{100}$$

다. ----- 12억원-----

② ~ ⑤ (현행과 같음)